

明治期 日本 小學校建築의 표준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문부성 제정 표준도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Stereotyped
Japanese Elementary School in Meiji Era

- Focusing on the Standard Drawings by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

이 정 우* 심 우 갑**
Lee, Jeong-Woo Shim, Woo-Gab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Japanese elementary school architecture in Meiji Era, in which Japanese modern education system was settled down and the school architecture flourished by mass construction of stereotyped school buildings. It is assumed that stereotyped school architecture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tandard drawings made by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standard drawings could be a ke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ereotyped school buildings in Meiji Era.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4 standard drawings and interpret it in relation to regulations and design guidelines for school architecture in that time.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stereotyped school architecture in Meiji Era are clarified in several categories. They are as follows : the deviation of classroom and corridor, the change of classroom size fixing to 4 *kan*(間) by 5 *kan*(間), the absolute use of north-facing single corridor type block-plan , and the change of other space such as waiting room(控所), special instruction room, auditorium and gymnasium

키워드 : 명치기, 소학교, 표준화

Keywords : Meiji Era, Elementary School, Stereotype

1. 서론

일본의 명치기(明治期: 1868년~1912년)는 1872년 학제(學制) 공포로 시작된 일본 초등교육제도의 근간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근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명치기 말인 1900년대 후반이 되면 6년제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국가주도하의 교육정책도 정립되어 이러한 체제가 전시체제하인 1941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될 때까지 일본 초등교육제도의 큰 흐름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초등 교육제도가 정착됨과 함께 이것이 실현되는 장인 교육시설에서는 표준화의 특성이 나타났

다. 교육제도의 정착에 따라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수의 교사시설이 필요했고 이를 경제적으로 산출해내기 위해 표준화 정책이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근대 초등교육제도의 정비와 학교 건축에서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명치기 말은 일본이 한국 내정에 간섭하여 이른바 통감정치를 시작하는 시기에도 중복된다. 즉, 1906년 3차 한일협약에 의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1910년 한일합방을 하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 교육부분에서도 일제의 관여가 시작되어 1906년 보통학교령 공포를 시작으로 일본식 학교제도가 국내에 이식되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일본의 학교 건축도 함께 국내에 도입되어 일제 강점기 내내 지속되며 이는 해방 이후에도 국내 학교건축에서 이른바 획일

* 정회원, 배재대 건축학부 조교수

** 정회원,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적 교사형(校舍型)을 지칭하는 표준화 교사(標準化 校舍)의 원류로서 작용한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 학교건축은 기존의 표준화 교사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 탈피노력에는 그 원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화된 학교건축의 원류가 되는 명치기 일본 소학교건축에 주목하여 그 표준화 과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학교건축의 제 양상을 함축하고 있는 표준도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표준도¹⁾들은 모두 4종으로 각각 1880년대, 90년대 그리고 1900년대에 문부성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다. 이 표준도들을 크게 단위교실과 복도, 단위교실 외 제공간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상호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당시의 관련 법규 및 지침 그리고 학교관리법류의 문헌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2. 분석 대상 표준도의 개관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표준도는 모두 4종으로 명치기 문부성에서 제작된 것들이다.(<표 1> 및 <그림 1>~<그림 4> 참조)

「소학교건설도(小學校建設圖)」는 당초 1873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882년 학사자문회의(學士諮問會議)²⁾시 인쇄,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³⁾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표준도인 만큼 평면유형의 분류기준이 가장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형상으로 되어 있다. 즉, 학교의 규모라든가 부지 조건에 따른 배치문제 등 보다 진전된 계획개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계대요(設計大要)」⁴⁾는 도면으로만 구성된 표준도집 형태의 나머지 사례들과는 달리 학교건축 전반⁵⁾에 관한 지침서로 여기서 도면은 예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면도 모두 가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표준도들과는 달리 실제사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설계대요」는 1890년 문부성에 건축괘(建築掛)가 만들

- 1) 당시에는 표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편의상 표준도로 통칭함.
- 2) 학사자문회의는 문부성 당국이 전국의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전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명했던 자리로 이 때 문부성 차원의 최초의 학교건축 관련 지침으로 알려진 「문부성 시유(文部省示諭)」가 발표되었다.
- 3) 藤森照信, 『日本近代思想大系19 : 都市·建築』, 岩波書店, p.264, 2000
- 4) 원제(原題)는 「學校建築圖說明及設計大要」임.
- 5) 중학교와 사범학교도 포함되어 있음.

어지면서 山口半六, 久留正道 등 건축 전문인들이 문부성에 진입하여 이들의 손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보다는 三島通良이라는 위생학자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교실의 채광, 통풍 등 위생조건이 강조되면서 북향편복도형⁶⁾으로 교사동 블록플랜을 고정화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학교건축에서는 위생의 개념이 일의적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학교 가상설계도(小學校假想設計圖)」 및 「소학교 건축도안(小學校建築圖案)」은 일본의 소학교제도가 무상의무 교육화되기 시작하는 1900년대에 만들어졌다. 더욱이 「소학교 건축도안」은 심상소학교가 현재처럼 6년제로 연장되는 1908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만큼 소학교제도의 전반적인 확충이 이루어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대요」에서 거의 모든 표준적인 지침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강당, 옥내체조장 등의 시설이 적용되어 있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동 유형을 분류할 정도로 일본의 소학교건축 계획방향이 정립된 시기의 표준도라고 할 수 있다.

3. 단위교실 및 복도의 표준화 과정 및 특성

3.1 단위교실별 구획과 복도에 의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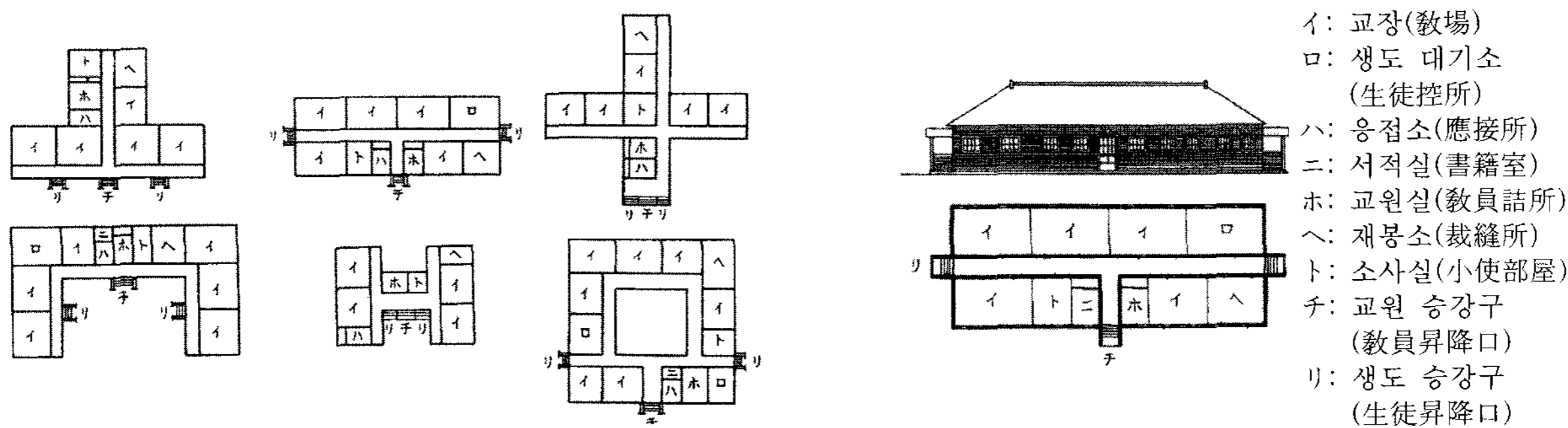
표 1. 명치기 문부성 제정 표준도 비교표

	소학교 건설도	설계대요	소학교 가상설계도	소학교 건축도안
작성 시기	1882년 (추정)	1895년	1900~2003년 (추정)*	1909
유형 분류 기준	평면형상	학교급 및 규모	학급수	학급수
교사동 종류	6종	6종**	7종	7종
종류	凹, 凸, 十, 一, 工, 口자형	심상, 고등심상, 고등소학교 각2종	1, 3, 5, 6, 8, 10, 12학급	1, 4, 6학급3종, 9, 12학급
층수	단층	단층 및 2층	단층	단층

* 「소학교가상설계도」의 제작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1903년 발간된 『學校管理法』에 소개되어 있어 1903년 이전이며, 12학급 규모의 학교가 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규모의 제한이 12학급으로 연장된 1900년(소학교령 시행규칙 29조 1항)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소학교의 경우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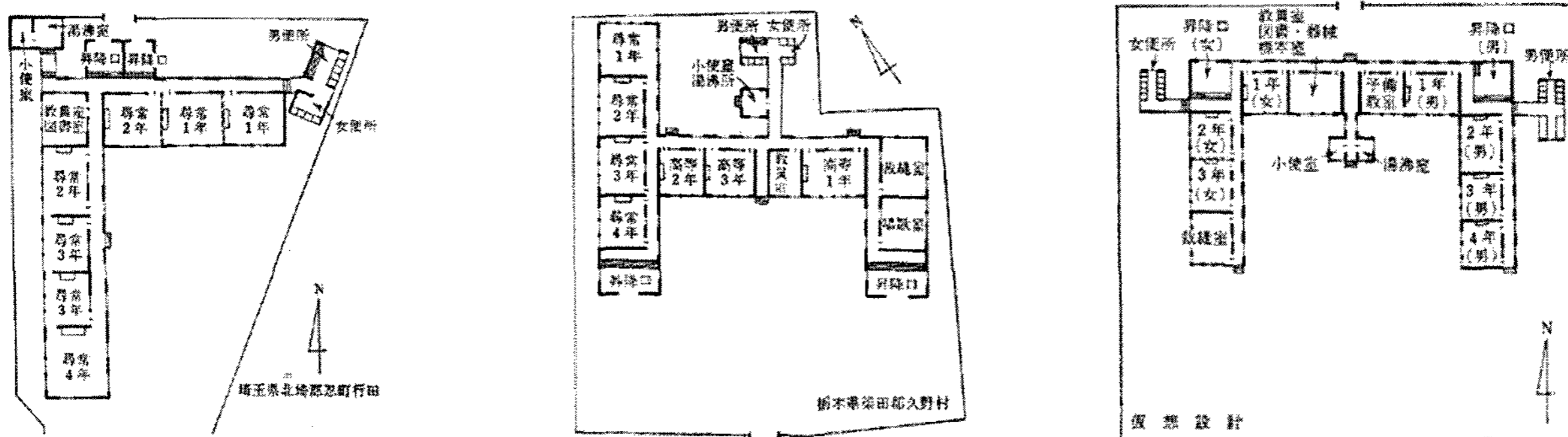
6) 여기서 북향은 상대적으로 향이 좋지 않은 쪽을 의미하고 복도의 향을 말한다. 이후 동일함.



(a) 평면유형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凸, 一, +, 口, 工, 凹자형)

(b) 一자형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그림 1. 「소학교 건설도」 (출처: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發祥から現代まで』,文教ニュース社,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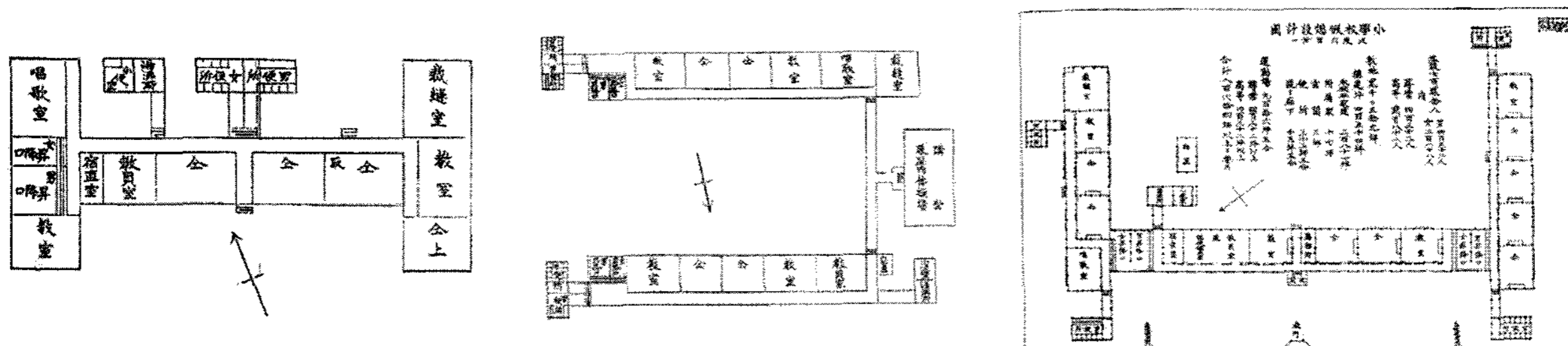


(a) 심상 소학교 (기옥현 북기군:埼玉縣北埼郡)

(b) 심상 고등소학교 (회목현 양전군:栃木縣梁田郡)

(c) 고등 소학교(가상설계도)

그림 2. 「설계대요」 (출처: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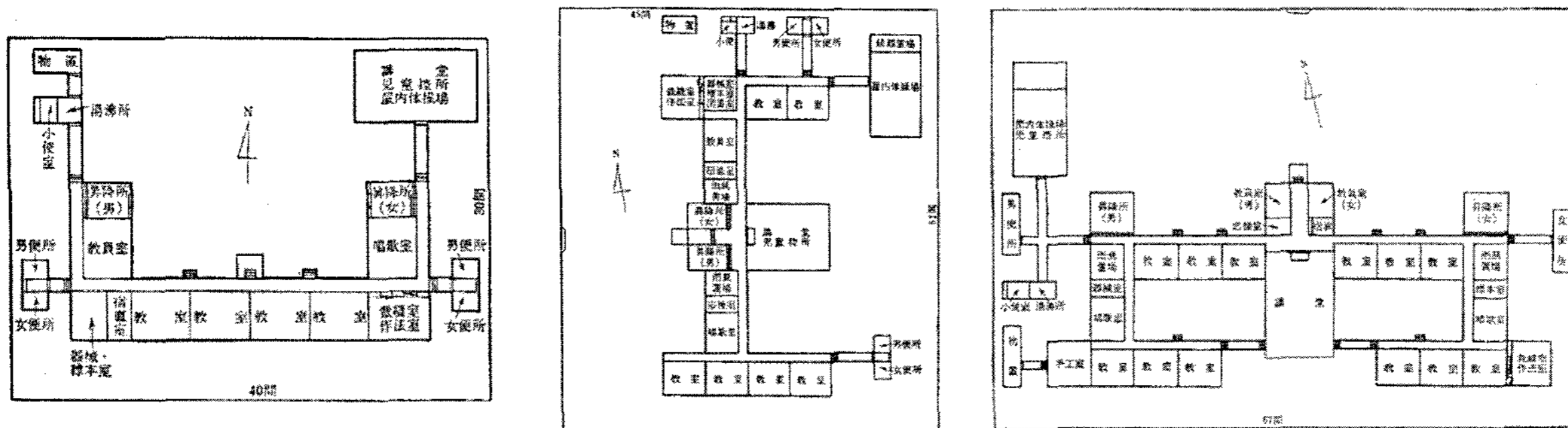


(a) 6학급

(b) 8학급

(c) 12학급

그림 3. 「소학교 가상설계도」 (출처: 清水儀六 외, 『學校管理法』, 寶文館, 1903)



(a) 4학급

(b) 6학급

(c) 12학급

그림 4. 「소학교 건축도안」 (출처: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1976)

분석대상이 되는 4개 표준도들의 교사동 평면에서는 모두 단위교실과 기타 실들이 서로 구획되어 있고 이는 통로에 해당하는 복도에 의해 연결된다. 지금은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학제기(學制期)⁷⁾에 해당하는 1870년대에는 이런 단위교실별 구획과 복도에 의한 연결이 일반화되어있지 않았다. 학제 초기에는 취학률도 낮았고 학년별 학생 분포도 주로 최저학년에 해당하는 하등(下等) 8급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단급학교 경영이 많았다. 따라서 학급별 수업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교과 교실형 수업이 진행되었다. 즉 학교에서 가장 넓은 실에 학생들을 남녀별로 분리하여 두고 이곳을 주 체류 장소로 하여 주로 습자(習字)교육이 이루어지고 독서(讀書), 산술(算術) 등의 다른 수업시간이 되면 몇 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다른 실로 이동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⁹⁾

1873년 약송현(若松縣)의 학교 회도면(學校繪圖面)(<그림5>)은 이러한 수업형태가 이루어졌던 학제 초기 학교 평면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남석(男席), 여석(女席)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주 체류장소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강당(講堂)이 필요에 따라 과목별 수업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가 지나며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년별 학생 분포도 다양해지면서 여러 개의 교실에서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교실들을 구획하고 통로공간을 구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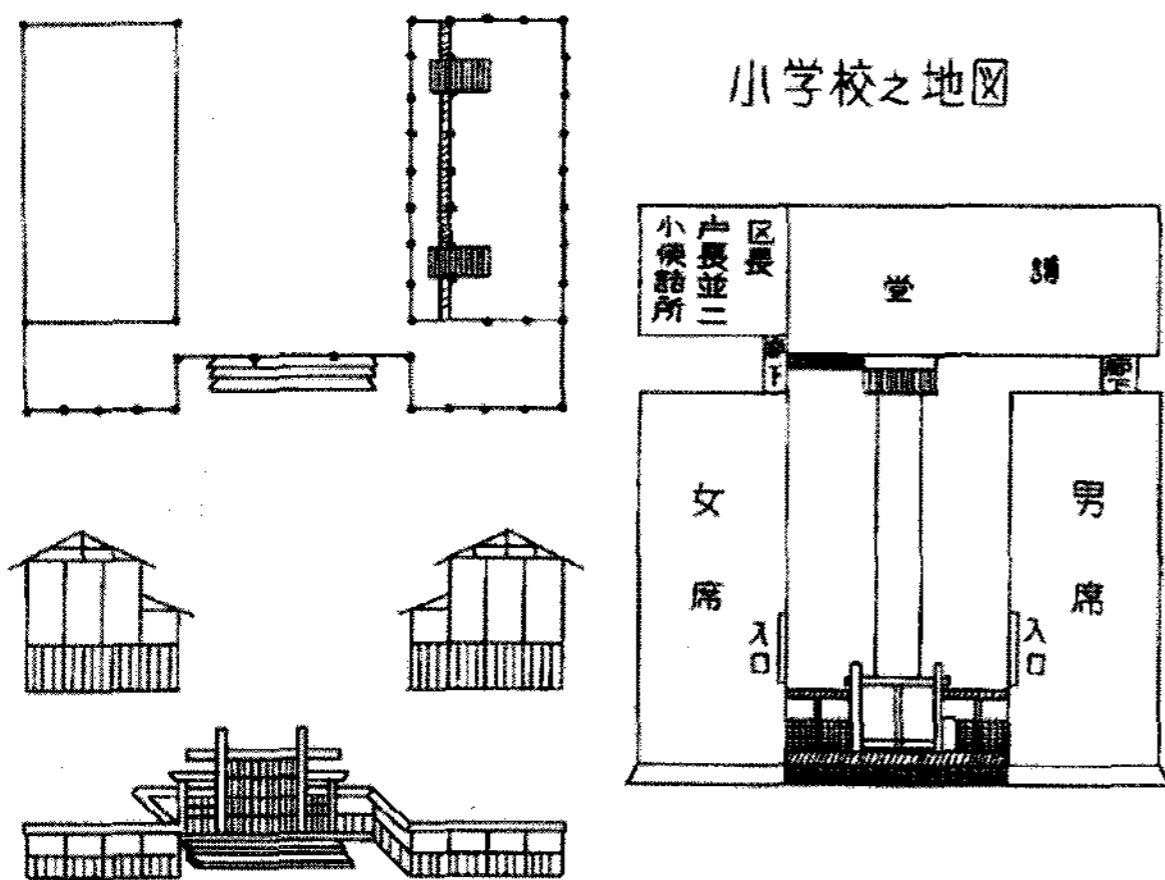


그림 5. 약송현(若松縣)의 학교회도면(學校繪圖面) (1873년)
(출처:菅野誠 의, 『日本の學校建築:發祥から現代まで』,
文教ニュース社, p.157, 1983)

7) 학제가 공포된 1872년부터 학제가 폐지되고 교육령이 공포되는 1879년까지를 의미함.
8) 학제초기 일본 소학교제도는 상등(上等) 8급, 하등(下等) 8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각 급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상등 4년, 하등 4년 총 8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9)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p.192, 1976

교실내로 통과동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교실 간 구획과 통로의 구분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사례는 교실 간 구획과 통로의 구분이 명확해지기 이전의 과도기적 상태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1875년 「장기현 학교건축 심득(長崎縣學校建築心得)」에 첨부된 학교도(學校圖)(<그림 6>)에서는 각 교실이 구분되어 있고 이는 복도에 해당하는 토간(土間)¹⁰⁾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 교실 간 구획과 통로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각 교실 간 구획과 통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실 간 구획문제는 교실간의 경계부 구성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현 학교건축 심득」의 학교도에서 교실 간 구획은 토간에 면한 부분과 동일하게 반창장자(半窓障子)와 판문(板戸)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반창장자와 판문이 정확히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판문은 출입구에 해당하며¹¹⁾ 반창장자는 창이 설치된 칸막이로 보인다. 출입구를 두어 교실 간 이동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또 창을 통해 시각적인 연결도 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접교실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은 토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실 사이를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교실 내에 설치된 판문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교실 간 구분은 되어 있으나 그 구획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는 교실이 통과동선이 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통로공간으로 복도가 분명히 구분된 구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1880년대 초에 공포된 「애원현 소학교 건축심득(愛媛縣小學校建築心得)」(1882년)이나 「궁성현 소학교

10) 일본 학교건축에서 복도에 해당하는 용어로 낭하(廊下), 연측(緣側), 토간(土間) 등이 사용되는데 본 도면에서는 토간으로 표기되어 있다. 토간은 일본 전통 민가의 실내공간 중 마루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면과 같은 높이의 공간으로, 신발을 신은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간으로 표현된 복도공간은 교실보다 바닥이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교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낭하는 구조에 상관없이 복도를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측은 일종의 뒷마루 형식의 공간으로 단순한 통로라기보다는 생활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측식 복도는 남측에 설치되고 외기에 노출되는 개방형 복도인 경우가 많았다.
11) 판문 외에 본 도면에서 출입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자(障子)가 있는데 이는 주로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합해 보면 교실 간 구획과 통로 공간으로 복도가 분명히 구분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3.2 단위교실 크기의 변화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들 중 단급학교와 9학년 교사동 내 한 개 교실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학교들의 단위교실은 4칸×5칸¹⁴⁾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다.¹⁵⁾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단위교실의 크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각 단위교실들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치수가 오랫동안 일본 학교건축에서 단위교실의 표준 치수로 사용되었던 4칸×5칸이라는 점이다.

먼저 각 단위 교실들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은 취학률 상승에 따라 학년별, 남녀별로 동일한 정원을 갖는 학급을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 이전의 3개 사례들은 일견 단위교실들의 크기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크기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평균 취학률이 90%를 넘어서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소학교 가상설계도」에서도 두 종류의 단위교실 규격이 사용되고 있어, 1900년대 초반까지도 단위교실 규격이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없을 정도로 학급구성은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1900년대 이전보다는 그 경우의 수가 줄고 있고 「소학교 가상설계도」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유형인 12학년 규모의 학교 (<그림 3>의 (c))에서는 3.5칸×4.5칸 규모의 교실 1종류만이 적용되어 있다. 즉, 이전 시기에 비해 교실규격의 범위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문부성에서 제시한 학교건축 관련 지침에도 반영되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표준도뿐만 아니라 학교건축 전반에 관한 지침들을 담고 있는 1895년 「설계대요」에는 폭 3~4칸, 길이 3.5~5.5칸 범위에서 총 11가지 크기의 단위교실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약 10년 후 발행된 「학교건축 설계요항(學校建築設計要項)」(1904년)에 제시된 단위교실의 크기는 폭은 3~4칸으로 동일하지만 길이는 4~5칸으로 그 범위가 줄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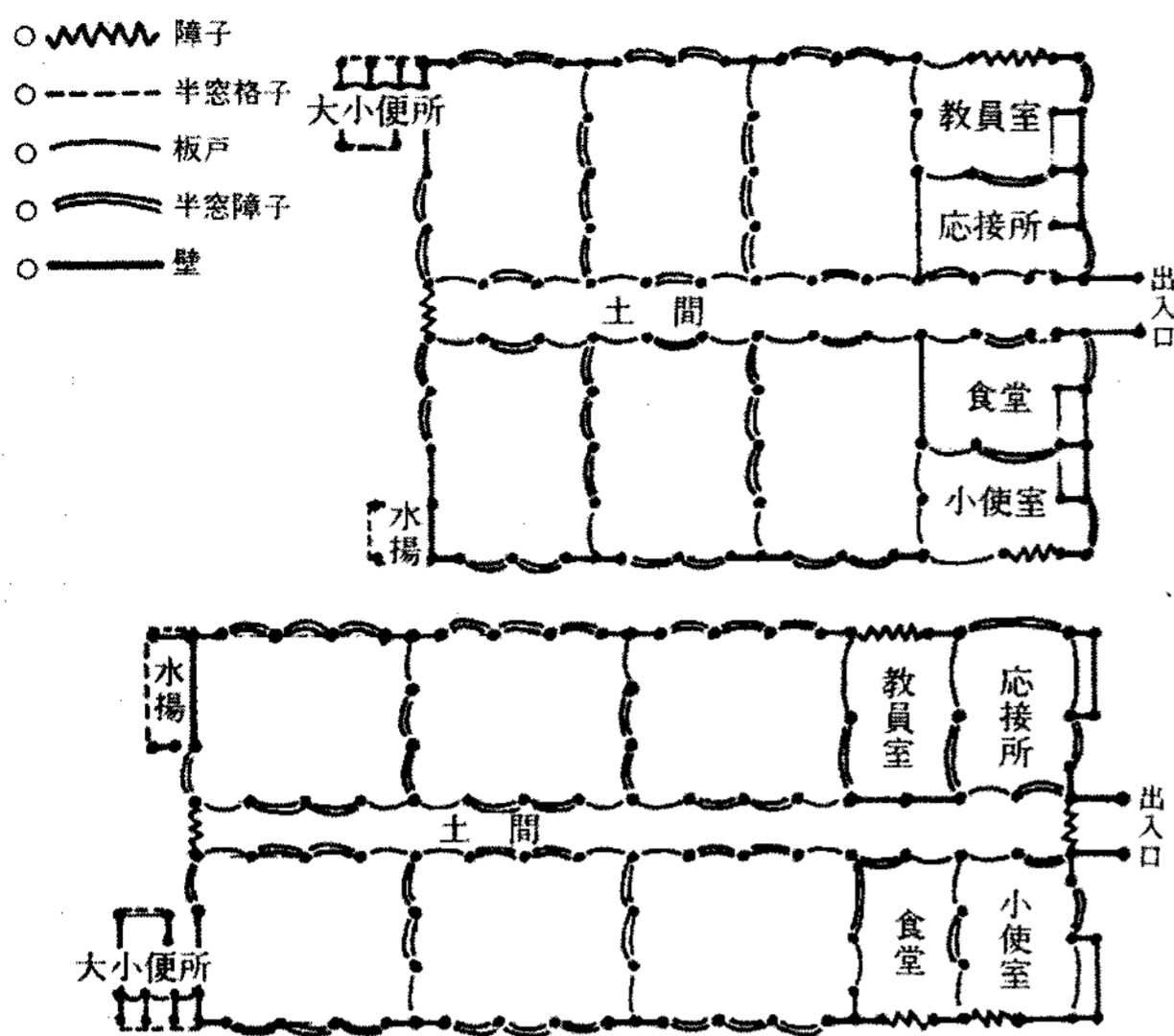


그림 6. 「장기현 학교건축 심득」의 학교도
(출처: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 資料編』,文教ニュース社, p.40, 1983)

건축심득(宮城縣小學校建築心得)(1883년)에서는 '여러 개의 교장(教場)[교실: 인용자]을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교장 밖에 폭 4척 내지 6척의 연측(緣側)¹²⁾을 두어 학생들이 교장내를 통과하지 않도록¹³⁾ 규정하고 있다. 1880년대가 되면 단위교실의 독립성과 통로공간으로서의 복도의 구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1882년 「소학교 건설도」에서 복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간이 아닌 낭하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낭하는 일반적으로 복도공간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이 「장기현 학교건축 심득」에서의 토간과는 다른 구조의 복도임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소학교 건설도」의 교사동 평면도를 관찰해보면 모두 승강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 몇 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낭하 부분은 교실과 같은 레벨에 설치되어 있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장기현 학교건축 심득」의 학교도에서처럼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는 교실내부를 이용해 인접교실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학교 건설도」 이후의 시대에 제작된 나머지 표준도들에 적용된 복도들은 모두 「소학교 건설도」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2>~<그림 4> 참조) 위의 내용들을 중

12) 주10) 참조

13) 「에원현 소학교 건축심득(愛媛縣小學校建築心得)」(1882년), 5조, (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59, 1983), 「궁성현 소학교 건축심득(宮城縣小學校建築心得)」(1883년), 13조, (앞의 책, p75)

14) 이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표현방식은 (교실의 폭)×(교실의 길이)를 의미함.

15) 「소학교 건축도안」에 별도로 단위교실 평면이 제시되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치수가 기재되어 있는 부지의 폭을 기준으로 단위교실의 규모를 추산해보면 4칸×5칸에 복도 폭은 1칸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이상적인 교실크기 관련 지침 및 규정

지침 또는 법규	이상적인 크기	수용 기준	수용 인원
1877 병고현 공립소학교 건축법 (兵庫縣公立小學校建築法)	3칸×4칸 (12평)	4인/평	35~50인
1877 산리현 학교건축법 개략 (山梨縣學校建築法概略)	3칸×4칸 (12평) 3칸×3칸 2.5칸×3칸	2.5인/평	30인
1881 문부성 출판 모범교장	3.5칸×4칸 (14평)	2.14인/평	30인
1882 에원현 소학교 건축심득 (愛媛縣小學校建築心得)	3.5칸×4칸 (14평)	3인/평	42인
1883 궁성현 소학교 건축심득 (宮城縣小學校建築心得)	3칸×4칸 (12평)	2.5인/평	30인

이렇게 교실크기의 범위가 축소되는 가운데 이상적인 교실의 크기는 반대로 조금씩 커져갔다. 이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단위교실로의 구분개념 조차 분명치 않았던 학제 초기에는 단위교실의 이상적인 크기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 1870년대 중반 이후 각 지방 별로 공포된 학교건축 지침에는 주로 3칸×4칸 규모 정도의 교실이 이상적인 안으로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인원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인원도 적었다.(<표 2> 참조)

하지만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이 이상적인 크기도 조금씩 커져가면서 4칸×5칸이 가장 이상적인 치수조합으로 정착되어 갔다. 이렇게 4칸×5칸 규모의 교실이 정착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1907년 출간된 다음의 글이 참조가 된다.

‘목재 공급이 충분한 촌락(村落)의 경우 최근 점점 길이 5칸, 폭 4칸, 복도 1칸의 교사를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나 도회(都會)에서는 아직 폭 4칸을 보지 못하고 대개 3칸 반의 폭을 가질 뿐이다. 이는 물가의 영향 상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¹⁷⁾

이를 보면 1907년 시점에서는 시골지역에서 먼저 폭 4칸의 교실이 정착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 ‘다급소학교의 교실은 폭 3칸 이상 4칸 이하, 길이 4칸 이상 5칸 이하, 단급소학교의 교실은 폭 및 길이 각각 4칸 이상 5칸 이하를 常例로 하고’ (『학교건축 설계요항』, 2장 소학교: 교실,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193, 1983)

17) 佐佐木清之丞, 『小學校の理論及教授訓練の實際』, 寶文館, p.31, 1907

여기서 물가의 영향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아직 폭 4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다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실의 길이 및 폭은 아동용 책상의 치수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또 일본건축에서는 목재의 길이에 의해 제한되어 통상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가 9척인 건축에서 그 폭은 3칸 반을 적당한 것으로 한다. (중략) 교실의 폭을 4칸으로 연장하면 우측[복도측: 인용자] 아동 일렬은 채광창에서 직접 광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략) 교실의 폭을 4칸으로 하려면 천정의 높이를 1장(丈)[약 3m: 인용자]이상으로 하여 채광창의 상단부를 이에 준해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목재를 사용하여 천정 높이를 1장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교실의 폭은 3칸 반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¹⁸⁾

채광상의 문제와 원목의 규격 문제 때문에 교실의 폭을 4칸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하여 교실의 폭은 3칸 반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교실의 폭이 4칸으로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4칸×5칸 교실은 1900년대 후반 이후 정착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소학교의 교실은 통상 폭 4칸, 길이 5칸으로 하는 것을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이는 폭을 4칸으로 하면 우수하게 4열을 만들 수 있어 아동의 출입이나 교수(教授) 중책상 사이를 순시할 때 좋고 또 길이를 5칸으로 하면 학급 편제규칙의 최고한도인 80인을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¹⁹⁾

3.3 북향 편복도의 정착

분석대상이 되는 4개 표준도들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1895년 「설계대요」를 기점으로 이후의 사례들은 각 교실의 향조건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실의 향 조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복도는 좋지 않은 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대편 교실은 좋지 않은 향이 될 수밖에 없는 중복도는 취할 수 없게 된다. 즉, 교실의 향조건이 우선되는 평면에서는 북향 편복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1882년 「소학교 건설도」에서는 향조건이 불리한 교실이 생길 수 있는 중복도가 一자형 평면에 적용되어 있다. 물론 이를 동서방향 배치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18) 清水儀六 외, 『學校管理法』, 寶文館, p.44, 1903

19) 教育學術研究會編, 『小學校事彙』, 同文館, p.10, 1906

해석할 수 있지만 口자형 평면에서 사면에 모두 교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향이 나쁜 쪽에도 교실이 배치되는 것을 금기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凸자형 평면의 경우는 북향복도와는 반대로 남향 복도형식으로 추정되는 평면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凹자형, 工자형, 口자형 평면에서 복도는 대칭 형태를 하고 있어 교실의 향보다는 동선단축이나 평면의 대칭구성을 우선시하는 계획특성을 보인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점들은 「소학교 건설도」에서는 교실의 향조건이 평면계획상 제일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1895년 「설계대요」 이후의 표준도들은 모두 교실의 향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중복도는 일부 평면구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조건이 불리한 실이 생길 수 있는 口자형 평면은 배제되어 있다. 또 凹자형 평면에서도 동선처리상 유리한 대칭형의 복도보다는 교실에서의 향조건을 우선시한 비대칭형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소학교 건설도」의 凹자형 평면과 동일한 평면형상을 하고 있는 「설계대요」의 고등소학교 가상설계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1>과 <그림 2>의 (c)참조)

凹자형 평면에 비대칭형 복도를 적용한 것은 「설계대요」 이후의 표준도들이 향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凹자형 평면의 중앙부를 남향으로 배치했을 경우 대칭형 복도를 적용하더라도 양익부는 동서향이 되어 향조건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위교실이 취해야 할 향으로 남, 서남, 동남을 규정하고 동향은 제외한 「설계대요」식의 계획방침²⁰⁾에서는 양익부에서 동향의 교실이 생기는 것은 피하고 있다.

이처럼 1895년 「설계대요」 이후 문부성 차원에서 제작한 모범적 교사동에서의 복도형식은 모두 교실의 향을 가장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북향 편복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학교건축에 채광, 통풍 등의 위생적 측면의 고려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건축에서 위생이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된 데에는 三島通良이라는 의학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1895년 「설계대요」는

三島通良이 1891년 문부성 위생취조 촉탁(衛生取調囑託)으로 부임한 후 일본 각지의 학교들의 위생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한 「학교위생 취조복명서(學校衛生取調復命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²¹⁾ 「학교위생 취조복명서」나 「설계대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복도의 형식이며 그것은 이른바 북향 편복도이다. 물론 여기서 복도 자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며 복도에 의해 연결되는 단위교실의 채광, 통풍 등의 위생적 조건이 주요 관심사였다.

학제 초기에는 전술한 것처럼 복도 공간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복도공간이 구분될 경우 북향편복도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복도형식은 중복도 또는 연측(緣側)식의 남향복도였다. 이들은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복도는 채광, 통풍 상 불리한 점이 많았고 연측식 복도는 개방형 복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풍조건은 우수했지만 남측에 복도를 두어 교실내에서의 채광조건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설계대요」의 시각에서 단위교실의 채광, 통풍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은 북향 편복도뿐이었다. 그러나 「설계대요」가 문부성 차원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은 없었기 때문에 북향 편복도가 곧 정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복도 형식의 단점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기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편복도로 전환될 수 있었으나 복도의 향 문제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일본의 서남부 지역에서는 여름철의 강력한 일사와 교실 내 조도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남향 복도가 선호되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표준도들은 모두 북향복도를 취하고 있지만 1895년 「설계대요」 발간 이후에도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는 남향의 연측식 복도가 선호되었으며 동북부지방에도 남향복도를 사용한 예들이 있었다.²²⁾ (<그림 7> 참조) 또 1899년 제정된 「소학교 설비준칙(小學校設備準則)」에서도 ‘복도는 편복도를 상례(常例)로 할 것’²³⁾을 규정했을 뿐 복도의 방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복도의 방향에 대한 문제는 「설계대요」에 의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복도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

20) 「설계대요」 이후 1901년 「교사위생상 이해조사보고(校舍衛生上ノ利害調査報告)」 및 1904년 「학교건축 설계요향」에서는 남, 서남, 동남 외에 서향이 추가되었지만 동향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三島通良은 「교사위생상 이해조사보고」에서 ‘일출국(日出國)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일본 : 인용자]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하면 채용키 어렵다.’고 하고 있다.

21)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p.136, 1976

22) 위 책, p.155

23) 「소학교 설비준칙(小學校設備準則)」(1899년), 7조, (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 :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149,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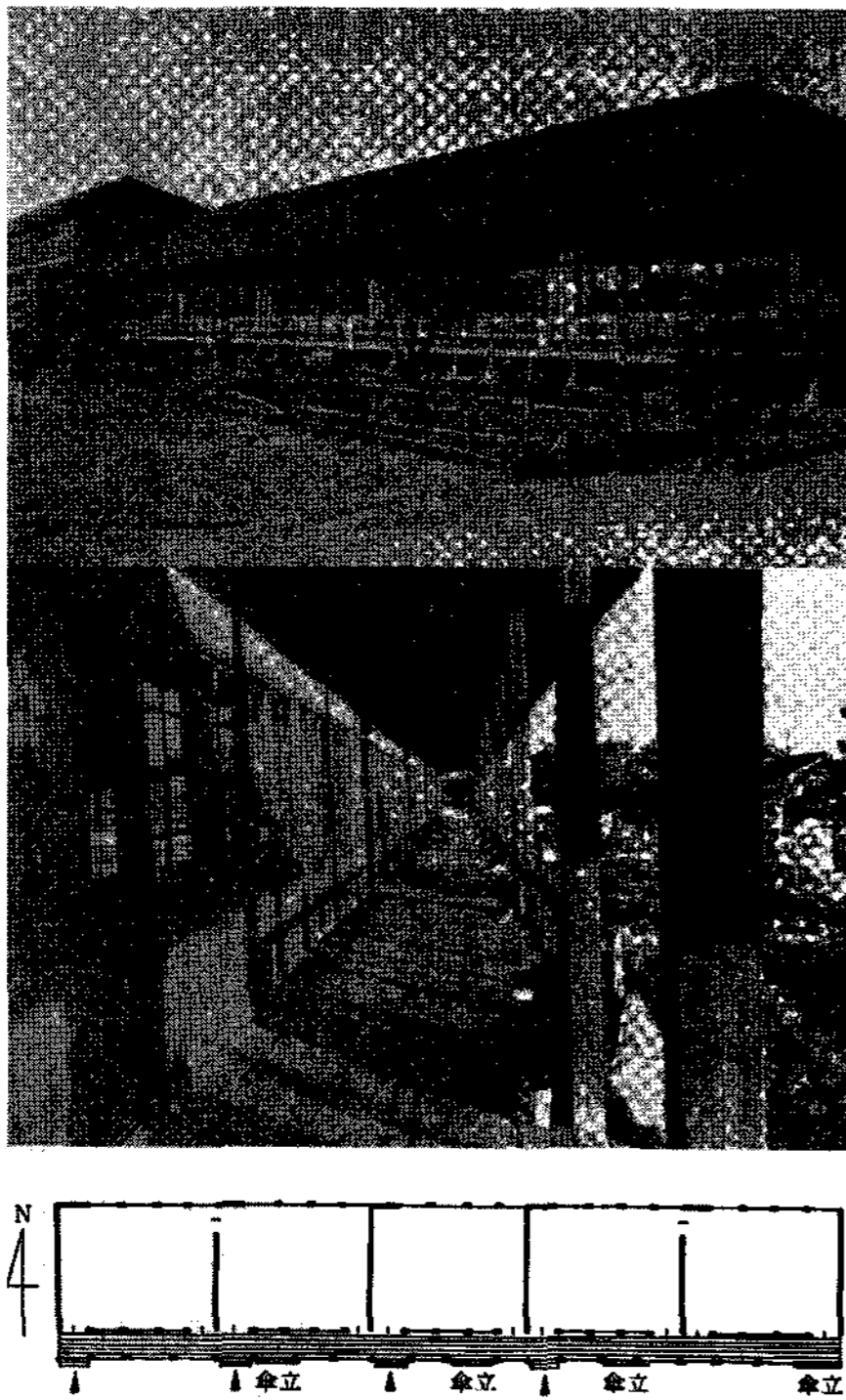


그림 7. 궁성현(宮城縣) 암소소학교(岩沼小學校)(1898년)
(출처: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p.138, 1976)

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복도 논쟁에는 건축학자 뿐만 아니라 교육학자나 위생학자들도 가세하여 학교건축에 위생 차원에서의 논쟁이 촉발되었다.

복도논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던 복도의 방향에 대해 결론이 내려진 것은 1901년 4월 8일자 관보에 게재된 三島通良의 「교사위생상 이해조사보고(校舍衛生上ノ利害調査報告)」를 통해서였다. 「교사위생상 이해조사보고」에서 三島通良은 서양학자들의 의견과 자신의 실제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북향복도의 우수성과 남향복도의 불가함을 주장했다.²⁴⁾ 이후 표준화된 학교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북향 편복도형 구조가 학교건축에서 불문율로 정착되었다.

북향편복도형 구조의 정착은 학교건축에 위생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생부분의 지나친 강조는 학교건축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연측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학교건축이 다양화되기 위한 조건들을 잃게 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4) 菅野誠 의, 『日本の學校建築：發祥から現代まで』, 文教ニュース社, pp.462~463, 1983

4. 단위교실 외 제공간의 변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1882년의 「소학교 건설도」에 계획되어 있는 제 공간을 분류해 보면 교실과 특별교실(재봉소:裁縫所), 관리시설(교원실: 教員詰所, 소사실:小使部屋, 서적실: 書籍室) 그리고 공용공간(대기소: 控所, 생도승강구: 生徒昇降口, 교원승강구: 教員昇降口) 등 현대학교건축의 시설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이후 계획된 표준도들은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하거나 특정 공간이 세분화되는 양상을 띤다. 즉, 학교건축에 소요되는 제 공간의 큰 틀은 1880년대에 이미 구축되었으며 이후는 각 부분에서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 중 주목되는 부분들을 대기소, 특별교실, 강당 및 옥내체조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1 대기소(控所)

대기소²⁵⁾는 수업시간 외 학생들이 주로 체류하는 장소였다. 일본 근대학교건축의 초기에 해당하는 1877년 「산리현 학교건축법 개략(山梨縣學校建築法ノ概略)」에서 대기소는 교실 외의 필수시설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고 ‘생도(生徒)들이 수업 전에 머무르는 곳으로 생도들의 식당을 겸하며 모자, 외투 등을 걸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되어 있었다.²⁶⁾ 이를 보면 일본 근대학교건축의 초기부터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배려한 계획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나 대기소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계획배경이 있었다.

青木正夫, 喜多明人 등은 이를 ‘교실 신성화’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²⁷⁾ 교실은 수업만을 위한 장소로 수업 외 시간에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장소로 대기소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실이 신성화된 데에는 교실에서의 규율, 질서를 강조하고 이를 상세히 규정한 학제 초기의 교수법 교과서들의 영향이 크다.

25) 공실(控室), 공석(控席), 지도소(支度所) 등으로도 표현되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소(控所)로 통일함.

26) 「산리현 학교건축법 개략(山梨縣學校建築法ノ概略)」(1877년), 22조, (菅野誠의, 『日本の學校建築：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45, 1983)

27) 青木正夫, 앞의 책, pp.227~228, 喜多明人, 『學校環境と子どもの發見：學校施設の理念と法則』, エイデル研究所, pp.194~195,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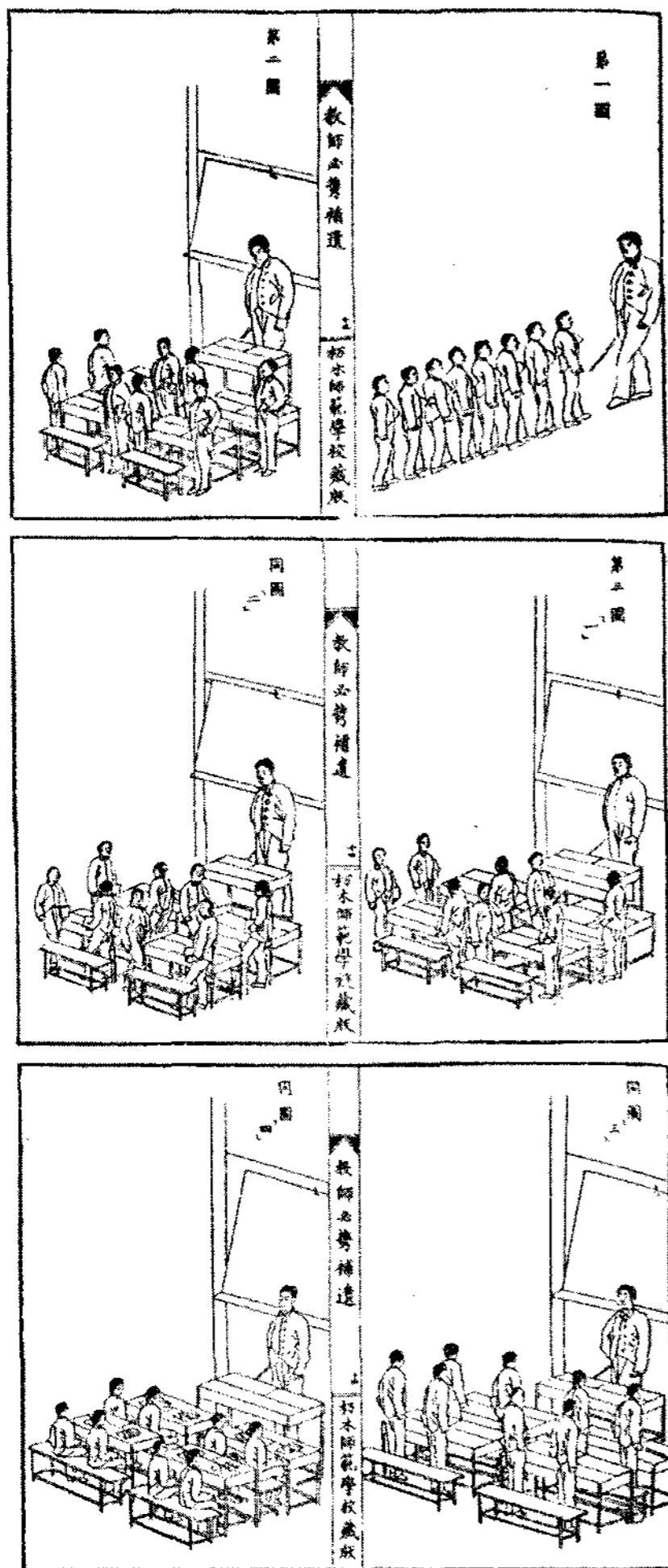


그림 8. 『小學校師必携補遺』(1874년)에 게재되어 있는 학생지도 요령 예시도 중 일부(출처:佐藤秀夫, 『教育の文化史 2 : 學校の文化』, 阿吽社, p.26, 2005)

<그림 8>은 1874년 출간된 『小學校師必携補遺』라는 교수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삽화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교실에 입장하는 것에서부터 수업 후 퇴장 시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삽화들 중 교실 입장에서 착석 시까지를 묘사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설명한 『小學校師必携補遺』본문 내용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매일 수업 시작 십분 전에 교사는 생도 대기소(生徒控所)에 이르러 각 생도들의 서적, 석반(石盤)²⁸⁾ 등을 각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첫째 줄 앞자리의 생도부터 순차적으로 줄을 서 교사 선도(先導)²⁹⁾하에 제일도(第一圖)²⁹⁾처럼 1, 2, 3, 4의 호령(戶令)을 반복하며 질서정연하게 교장(教場)에 입장한다.’³⁰⁾

28) 노트가 보급되기 이전의 필기용 도구

29) <그림 8>의 우측 상단 그림

30) 佐藤秀夫, 『教育の文化史 2 : 學校の文化』, 阿吽社, pp.27~28, 2005 에서 재인용

이후의 과정도 교과서를 넘기는 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모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³¹⁾ 여기서 수업의 시작이 교실에서부터가 아니라 학생들이 대기해 있는 대기소에서부터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오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교실 외 학생들의 대기 장소인 대기소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대기소가 계획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외에 대기소가 필요했던 또 다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휴게시간이 되어도 학생들이 교실 내에 있다면 교실 내 공기를 갱신(更新)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생도들의 휴양(休養)상에도 불리함으로 이 시간에는 실외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천기청량(天氣晴朗)하고 기후가 온화할 시는 옥외 운동장에 나가면 되지만 천기불량(天氣不良)해 옥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대기소(控所)같은 설비가 없으면 복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복도에서 왕성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먼지가 부유하여 실내로 산입(散入)되어 실내공기를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게 된다. 따라서 교사(校舍) 내 적당한 곳에 대기소 같은 설비를 요한다.’³²⁾

즉, 교실 내 공기를 순환하기 위한 위생적 차원의 배려도 대기소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³³⁾ 대기소를 별도로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시간-학급교실, 수업 외 시간-대기소식으로 학생들의 체류공간을 이중으로 계획하는 것은 실용이 강조되어야 하는 문부성의 학교시설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882년 「소학교 건설도」에서도 6개의 평면 유형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유형에만 대기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1895년 「설계대요」에는 모두 배제되어 있다. 이후 1900년대에 작성된 「소학교 건설도」나 「소학교 건축도안」에서 다시 대기소가 등장하지만 모두 강당이나 옥내체조장(屋內体操場)과 겸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31) 학제초기 규율, 질서가 강조된 교수법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佐藤秀夫, 『教育の文化史 2 : 學校の文化』, 阿吽社, pp.26~38, 2005 참조

32) 駿河尚庸, 『最新學校衛生學』, 杏林舎, p230, 1910

33) 일례로 1882년 「애원현 소학교 건축심득(愛媛縣小學校建築心得)」에는 대기소의 면적을 교실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하면 교실면적도 커지고 그에 따라 대기소도 동반하여 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4.2 특별교실

네 종류의 표준도들에서 특별교실에 해당하는 실로는 재봉실(裁縫室), 창가실(唱歌室), 수공실(手工室) 등이 있다. 이 중 수공실은 가장 마지막 사례인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의 12학년 학교 (<그림 4>의 (c))에만 설치되어 있어 명치기에는 일반화되지 않았던 실로 볼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소학교 건설도」에서부터 계획되어 있고 또 거의 모든 사례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교실은 재봉실이였다. 창가실은 1895년 「설계대요」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나 단급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적용된 것은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 뿐이다.

명치기의 학교건축 관련 지침이나 법령을 통해 보아도 재봉실에 대한 규정은 1882년 「문부성시유(文部省示諭)」 이후 모든 학교 건축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포함되어 있으나 창가실은 이보다 10여 년 후인 1899년 「소학교 설비준칙(小學校設備準則)」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다.³⁴⁾ 이를 통해 보면 명치기 일본 소학교건축에서 특별교실이 설치된 순서는 재봉실, 창가실의 순이며 특히 재봉실은 1880년대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아직 여학생 취학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 중 가장 먼저 재봉실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취학률이 낮았던 여학생의 취학 독려를 위해 이의 설치가 권장되었기 때문이다.³⁵⁾ 하지만, 재봉 수업만을 위한 교실이라면 당연히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재봉실은 필수 특별교실로 존재했다. 이는 당시 바느질 위주의 화식재봉(和式裁縫)이 교육되었기 때문에 다다미가 깔려있는 좌식구조였던 재봉실이 지역주민들에게 집회장소로 애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지역주민 이용시설로서의 존재가치도 있었던 것이다.³⁶⁾ 이후 재봉실은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에서는 작법실(作法室)³⁷⁾과 겸용되고 있는데 이도 역시 이용률 문제와 관계가 있다. 당초 여학생의 취학을 독려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던 재봉실은 1900년대 후반 여학생의 취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그 존재가치를 잃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수업시간에의 활용을 모

색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창가실이 특별교실 중 재봉실 다음으로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창가실은 그 명칭처럼 노래를 부르는 수업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주용의 오르간 1대 정도면 기존 교실 구조를 이용하여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실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가의 장비나 설비들이 필요한 이과실(理科室), 공작실(工作室) 등이 보급되는 것은 대정기(1912년~1925년 : 大正期) 이후이며³⁸⁾ 명치기 소학교의 특별교실은 재봉실, 창가실 정도로 한정된다.

재봉실이 다다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외에 특별교실에는 별도의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이후 대정기에 확충된 특별교실들처럼 준비실이 부속되지도 않았다. 1907년 발간된 『小學校の理論及教授訓練の實際』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특별교실의 구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교실에는 통상교실 및 특별교실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구별은 사용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구조상으로는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이다.’³⁹⁾

특별교실로서의 특수한 조건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또한 재봉실, 창가실이 다른 특별교실보다 먼저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다만 ‘도화(圖畫), 재봉교실(裁縫教室) 등과 같이 충분한 광선을 요하는 것은 가능한 세 방향에서 채광할 것’⁴⁰⁾이라는 지침에 맞춰 재봉실은 건물의 단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음이 문제 될 수 있는 창가실은 일반교실에서 조금 이격된 자리에 설치되는 정도의 평면구성상의 배려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4.3 강당(講堂) 및 옥내체조장(屋內体操場)

강당과 옥내체조장은 1900년대 이후의 표준도들에서만 계획되어 있다. 1900년대 초반의 「소학교 가상설계도」에는 총 7개 중 2개 유형의 학교에 계획되어 있으며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에는 단급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유형의 학교에 계획되어 있다. 특히 2개 사례는 강당과 옥내체조장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기까지 하다.(<그림 4> (b), (c) 참조) 이를 보면 강당과 옥내체조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소학교건축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강당이 앞서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명

34) ‘창가(唱歌)와 재봉(裁縫) 등을 과하는 학교에서는 편의(便宜)에 따라 특별교실을 설치하고’, 「소학교 설비준칙(小學校設備準則)」(1899년), 5조. (菅野誠외, 『日本の學校建築: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148, 1983)

35)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1976, p.210

36) 喜多明人, 『學校環境と子どもの發見 : 學校施設の理念と法則』, エイテル研究所, p.196, 1983

37) 작법실(作法室)은 예절교육실에 해당한다.

38) 青木正夫, 앞의 책, p.168

39) 佐佐木清之丞, 『小學校の理論及教授訓練の實際』, 寶文館, p.28, 1907

40) 「설계대요」(1895년) 1장, 총설, (菅野誠외, 『日本の學校建築: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111, 1983)

치기의 학교건축 관련 지침이나 법규들을 비교해 보면 강당에 대한 언급이 먼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강당의 경우 1882년 「문부성시유(文部省示諭)」⁴¹⁾ 이후의 모든 법령, 지침들에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하지만, 필수시설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필요할 경우’⁴²⁾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895년 「설계대요」에서는 강당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교실의 칸막이를 변경하여 대용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⁴³⁾ 옥내체조장의 경우는 1895년 「설계대요」 이후 모두 법령, 지침들에 나타난다. 단 「설계대요」에서는 옥내체조장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고 교지면적 기준의 단서 조항으로 옥내체조장 등에 소요되는 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⁴⁴⁾ 당시 소학교건축에서 옥내체조장이 건립되는 예가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옥내체조장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1899년 「소학교 설비준칙」에서 부터이다.⁴⁵⁾ 표준도들에서 강당, 옥내체조장, 대기소 등은 함께 겸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법규나 지침에서는 옥내체조장과 대기소의 겸용이 언급된 경우는 있었지만⁴⁶⁾ 강당과 옥내체조장의 겸용이 언급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강당과 옥내체조장의 계획 배경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학교에서 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은 1880년대 이후 일본교육이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의식들이 중요해지고 이러한 의식들을 엄숙히 거행할 수 있는 장소가 요구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1890년 교육칙어(教育勅語)가 공포되고 이의 봉독식(奉讀式)이 학교의 주요행사가 되면서 더욱 증가되었고 이른바 어영(御影)⁴⁷⁾과 교육칙어 등

본(教育勅語謄本)의 봉치소(奉置所)로서의 기능도 추가되어 갔다.⁴⁸⁾ 따라서 강당은 ‘경비가 허락하는 한 장엄(莊嚴)하고 품격 있는 건축’⁴⁹⁾이어야 했으며 ‘학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었다.

옥내체조장은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는 한랭지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굳이 체조 시간이 아니어도 실내 놀이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분히 대기소적인 성격을 갖는 공간이기도 했다. 반면 기후조건이 좋은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았으나 우천시나 폭염시의 활용성 때문에 점차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1900년대 들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강당과 옥내체조장의 등장 배경과 성격을 비교해보면 강당이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작위적 시설이었다면 옥내체조장은 지역의 기후 조건과 학생들의 행태가 반영된 실용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옥내체조장은 강당과 달리 그 구조도 실용적인 것이 권장되었다. 옥내체조장에 대해 다른 법규나 지침보다 상대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1904년 「학교건축 설계요항」의 옥내체조장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이를 잘 시사한다.

‘옥내체조장은 단층으로 하고 천정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구조는 간략히 할 것(후략)’⁵¹⁾

‘옥내체조장은 (중략) 4면 또는 2, 3면을 개방할 것’⁵²⁾

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인 강당과 유사한 대규모의 공간이 또 하나 설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문부성이 가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04년 문부성 내에 체육계 인사들로 체조유희취조위원회(體操遊戯取調委員會)가 설립되고 이 위원회는 다음해인 1905년 옥내체조장 겸 강당의 가상설계도(<그림 9> 참조)를 만들어 사면을 벽이나 창으로 하고 마룻바닥을 설치할 것 등을 권장하였다.⁵³⁾ 1909년 「소학교 건축도안」에 강당과 옥내체조장이 겸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이렇게 되면서 옥내체조장이 온전하게 실내공간으로 전환된 것은 이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41) 「교사(校舍)는 교장(教場)(여자를 위해 특히 채붕, 예절 등의 교장을 요함), 교원실(教員詰所), 탕비실(湯呑所), 변소(便所) 등을 갖추는 것. 또 강당, 식당 등을 갖추는 가장 편리」(「문부성시유(文部省示諭)」(1882년), 소학교 건축 제4, 菅野誠외, 『日本の學校建築: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70, 1983)

42) 「필요할 경우 강당, 생도대기소(生徒控所), 우중체조장(雨中體操場), 숙직실(宿直室), 탕비소(湯沸所), 소사실(小使室), 창고(物置) 등을 설치할 것」, (「소학교설비준칙(小學校設備準則)」(1899년) 5조, 앞의 책, p.148)

43) 「설계대요」, 제2장 소학교, 개설 (앞의 책, p.114)

44) 「설계대요」, 제2장 소학교, 개설 (앞의 책, p.113)

45) 주42) 참조

46) 소학교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지만 1901년 「중학교령 시행규칙(中學校令 施行規則):제 4장 설비」, 제 32조에 ‘옥내체조장은 생도대기소(生徒控所)와 병용함’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1년 전에 공포되었던 「소학교령 시행규칙(小學校令 施行規則) 제2장 설비」나 이후 소학교관련 법령, 지침에는 이러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7) 일본천황과 황후의 사진

48)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pp.232~237, 1976

49) 渡邊辰次郎, 『實驗學校管理法講話』, 寶文館, p.306, 1906

50) 青木正夫, 앞의 책, pp.239~241

51) 「학교건축 설계요항」, 제1장 총설, 체조장, (菅野誠외, 『日本の學校建築: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p.189, 1983)

52) 「학교건축 설계요항」, 제2장 소학교, 체조장, (앞의 책, p.193)

53) 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 發祥から現代まで』, 文教ニュース社 p.484, 1983



그림 9. 「체조유희 취조보고(體操遊戯取調報告)」(1905년)에 제시되어 있는 옥내체조장 겸 강당의 가상 설계도 (출처: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發祥から現代まで』, 文教ニュース社, p484, 1983)

5. 결론

명치기는 일본 초등교육제도가 정비되고 이와 함께 학교건축에서의 획일적 표준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치기 일본 소학교건축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문부성 제정 표준도들을 대상으로 그 표준화 과정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단위교실과 복도는 초기에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나 1880년대 이후 단위교실 간 구획과 통로공간으로 복도의 구분이 분명해졌다. 한 교사동내에 적용되는 단위교실은 학급구성의 유동성 때문에 한 종류가 아니었으나 1900년 후반이 되면 4칸×5칸 규모로 한정되어 갔다. 이와 함께 채광, 통풍 등의 위생적 조건이 일의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북향편복도 구조의 교사동 평면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 획일적 교사동 평면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대기소와 같은 공간은 교실과의 중복성 때문에 사라지거나 타 공간과의 겸용 형태를 띠게 된다. 특별교실이 적용된 순서는 재봉실, 창가실의 순이었고 이것이 명치기 일본 소학교 건축에 일반화된 특별교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실들은 일반교실과 큰 차이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교사동 평면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대형공간이었던 강당과 옥내체조장은 그 등장배경과 도입 시기는 서로 달랐으나 표준도에서는 1900년대 이후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실용적 차원에서 겸용이 권장되었다.

이렇게 명치기 일본 소학교건축의 표준화 양상은 단위교실의 고정화, 북향 편복도의 고착, 특별교실의 미분화 그리고 강당 및 옥내체조장의 도입 및 겸용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표준화 양상은 교육 전반을 통괄했던 문부

성에 의해 제시된 것이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후의 학교건축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일본 학교건축 획일화의 일단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통감부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국내에도 도입되어 이후 국내 학교건축에서도 획일적 표준화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학교건축에서의 획일적 표준화가 국내 학교건축에 가졌던 영향이나 그 의미관계에 대해 다루지 못했지만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위의 주제는 후속연구로 미룬다.

참고 문헌

1. 강상훈, 『일제강점기 근대시설의 모더니즘 수용-박람회, 보통학교, 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2. 교육시설학회, 『한국 근대 학교건축 발달사 : 전편, 후편』, 2003
- 3.菅野誠 외, 『日本の學校建築：發祥から現代まで, 資料編』, 文教ニュース社, 1983
4. 教育學術研究會 編, 『小學校事彙』, 同文館, 1906
5. 溝口正人, 『近代小學校建築の成立をめぐる:近代地域社會と學校建築』, 『藝術工學への誘いIV』, 岐阜新聞社, 2000
6. 國立教育研究所 編, 『日本近代教育百年史 3』, 教育研究振興會, 1974
7. 渡邊辰次郎, 『實驗學校管理法講話』, 寶文館, 1906
8. 藤森照信, 『日本近代思想大系19 : 都市·建築』, 岩波書店, 2000
9. 一條龜次郎, 『學校管理法』, 博文館, 1893
10. 文部省, 『學制百二十年史』, ぎょうせい, 1992
11. 文部省普通學務局 編, 『小學校建築圖案及學校園』,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09
12. 三浦茂, 『幻の學校をたずねて : 明治の木造·洋風建築學校』, 早稻田出版, 2004
13. 小山左文二, 『學校管理法教科書』, 文學社, 1904
14. 伊澤修二, 『學校管理法』, 白梅書屋, 1883
15. 佐藤秀夫, 『教育の文化史 2 : 學校の文化』, 阿吽社, 2005
16. 佐佐木清之丞, 『小學校の理論及教授訓練の實際』, 寶文館, 1907
17. 駿河尚庸, 『最新學校衛生學』, 杏林舍, 1910
18. 青木正夫, 『建築計劃學8-學校 I』, 丸善株式會社, 1976
19. 清水儀六 외, 『學校管理法』, 寶文館, 1903
20. 喜多明人, 『學校環境と子どもの發見 : 學校施設の理念と法則』, エイデル研究所, 1983